

'21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안내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목 차

- 1 마을기업 개요
- 2 마을기업 요건
- 3 마을기업 지정절차
- 4 마을기업 지원사항
- 5 관련기관 및 문의처

같이하는 마을기업,
가치있는 지역사랑



마을기업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

연혁

- '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확정하고 마을기업 시범사업 시작
 - '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후 '10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 '10.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후 '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 본격 추진

2.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은 4가지 요건 및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고려하여 설립·운영해야 함

공동체성

- 기업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 * 마을기업 출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회원이 출자하는 것이 원칙

공공성

-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 추구
 - *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지역성

-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참여
 - * 마을기업 회원 70% 이상이 같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 * 마을기업은 법인이어야 함

참 고

마을기업 현황

(‘19. 12. 31. 기준)

◦ 시·도 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사	1,556	95	74	88	53	61	52	41	29	179	120	84	134	105	160	125	120	36

◦ 업종 별

업종	계	일반 식품	전통 식품	관광 체험	공예품	교육	문화 예술	재활용	유통 기업	의료 산발	물류 배송	사회 복지	에너지	기타
비율 (%)	100	44.3	13.5	12.7	5.8	4.4	4.1	2.4	1.4	1.0	0.8	0.7	0.3	8.6

◦ 법인형태 별

법인 형태	계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사단법인	영여조합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재단법인	기타
비율 (%)	100	40.2	25.5	19.2	3.7	2.3	1.6	1.0	0.2	6.3

3. 마을기업 지정절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붙임. 관련서식

1회차(신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예시)

1회차(신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개요

사 업 명	아파트 새벽반찬 사업		
사업 목적	1.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2. 반찬사업을 통한 독거 어르신 돌봄 제공(고독사 예방) 3. 주민공동체 수익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주거환경 개선)		
사업 내용	○ 아파트 단지 주민 대상 반찬제조 및 새벽배달 사업,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서비스(반찬배달) 제공 및 주민 일자리 창출, 반찬배달을 통해 독거 어르신 안부 묻기 돌봄 서비스 병행.		
사 업 비	신청보조금	50,000 원원	자부담금 10,000 원원
가점 항목	※ 공고문을 참조하여 가점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첨부서류	신청 시 작성서류	1. 1회차 사업신청서 1부(신청서식1)	
		2.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1부	
		3. 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법인내부 발행서류	5. 법인정관 1부	
		6.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7.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외부기관 발급서류	8. 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9.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1.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1부	
		12.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1부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빙서류	* 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3-2. 1회차 마을기업 세부사업 계획

■ 세부사업 1 : 아파트 새벽반찬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사업필요성 예시) 아파트 단지 내 유휴자원 활용 필요성 주민 활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의 필요 반찬배달 사업의 특징을 활용한 단지 내 어르신 돌봄 가능			
	2) 사업내용 예시) * 아파트 주민 대상 새벽반찬 배달사업 - 설문조사를 통한 반찬 수요 파악 -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시식회 개최 - 아파트 단지 유휴공간에 반찬생산 설비 구축, 인·허가 완비			
	3) 사업 운영체계 예시) - 단지 내 주민모임,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지역 복지관 등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반찬 안배기·배출은 주민 일자리로, 독거 어르신 발굴과 지원 방식은 공공기관과 복지관 담당자의 역할로 결합하여 수익과 지역 돌봄을 함께 수행			
	4) 사업전략(홍보·마케팅 상의 차별성) 예시) (고정파트) 지역 복지관·평생교육센터와 협약 체결을 통해 고정 거래 (주민신회)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만드는 반찬을 월 8회 저렴한 가격으 로 제공받을 수 있어 정기주문자 마련에 유리함 (고정비용 감소) 아파트 단지 내 유휴시설 활용으로 임대료 부담 감소, 단 지 내 가구를 주요 고객으로 삼아 배송료 절감			
추진 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3월 : 마을기업 지정 및 보조금 수령 4~5월 : 반찬제조 시설 공사 및 인허가 6~7월 : 시식회를 통한 메뉴 수정·보완 8~10월 : 정기고객 확보(월 150명) 노력 및 서비스 체계 정립 11~12월 : 오후 반찬 배송을 통한 어르신 안부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세부사업 비용별 예산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21,500	인건비	보수	1인 1,000원원×10개월(3~12월)=10,000원원 회원소식지 월 10만원×10개월=10,000원원 회원가입기념품 20원원×200개=4,000원원 포스터 100장(디자인비 포함)=500원원
		일반 수용비	홍보물	
			광고료	리플렛 2,000장(디자인비 포함)=1,000원원 전문가활동료
			임차료	반찬제조 시설 개발 2식×2,000원원=4,000원원 사업장임대료 250원원×10개월=2,000원원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건설비	4,000	시설비	바닥공사(2,000원원), 수도공사(2,000원원) 오픈(3,000원원), 업소음식기세척기(3,000원원), 냉동고(3,000원원), 싱크대(5,000원원), 에어컨(1,500원원), 환기시설(2,000원원), 반 찬통(200개, 2,000원원)
	유형자산	19,500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55,000			

참고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예시)

붙임: 관련서식

3-3.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고
아파트 새벽반찬 사업	55,000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고 (산출근거)
경상경비	인건비	10,000	보수
	운영비	홍보물	1인 1,000천원×10개월(3~12월)=10,000천원
			회원소식지 월 10만원×10개월=10,000천원
			회원가입기념품 20천원×200개=4,000천원
			포스터 100장(디자인비 포함)=500천원
		광고료	리플렛 2,000장(디자인비 포함)=1,000천원
			반찬레시피 개발 2식×2,000천원=4,000천원
		전문가 활용비	사업장임대료 250천원×10개월=2,000천원
	경상경비 소계	31,500	
자본경비	건설비	4,000	시설비
	유형 자산	19,500	자산취득비
			오븐(3,000천원), 업소용식기세척기(3,000천원), 냉동고(3,000천원), 싱크대(5,000천원), 에어컨(1,500천원), 환기시설(2,000천원), 반찬통(200개, 2,000천원)
	자본경비 소계	23,500	
	합계	55,000	0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3-4.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1년)

※ 사업비(경상경비만 표기)를 함께 표기할 것

○ 2021년도(예시)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천원)	비고 (단가×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새벽반찬	200,000	-월200개×100,000원×10개월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200,000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80,000	-월200개×40,000원×10개월	원가율: 40%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10,000	-상근 1명×월1,000,000원×10개월		
		인건비 (비상근)	30,000	-비상근 10명×월300,000원×10개월		
		보험료 등	1,000	-위생안전보험 100,000원×10개월		
		감가상각비	0			
		개발비 등	4,000	반찬레시피 개발 2식×2,000천원		
		임차료	2,500	-월250,000원×10개월		
		광고선전비	15,500	-회원소식지 월 10만원×10개월 -회원가입기념품 20천원×200개 -포스터 100장(디자인비 포함) -리플렛 2,000장(디자인비 포함)		
		기타	2,000	-회계처리 월100,000원×10개월 -각종세금 월100,000원×10개월		
		총지출(B)		65,000		
		순이익(C), (C=A-B)		55,000		

4. 마을기업 지원사항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지원

- 최대 3차례, 1억원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원칙
- 마을기업 지정 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 가능

자립 지원

- 판로·유통 지원
 - 유통망 확대, 유통업체 입점 지원(입점설명회 등), 판촉 행사(상생장터·박람회 등) 개최 및 참여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마을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경영 및 유통·마케팅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 추진

5. 관련기관 및 문의처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 마을기업 관련법 제정 추진, 시행지침 수립 등
- 제도운영 관련 재정적 지원
-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판로지원, 인지도 제고 홍보

지방자치단체

-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기업 발굴, 참여 유도
- 보조금 교부·관리, 결산 및 자체 예산 지원 등
- (광역) 모집공고 및 지정요건 심사
- (기초) 신청접수 및 적격 검토

마을기업 지원기관

-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심사지원 및 신규기업 발굴
-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상시 컨설팅 및
경영·판로·마케팅 등 지원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마을기업팀

☎ 044-205-3433~6

시·도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21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서울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50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353-3553
부산	사회적경제담당관	051-888-4481	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1
대구	사회적경제과	053-803-6491	(사)커뮤니티와경제	053-944-4001
인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2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032-5503-7003
광주	일자리정책과	062-613-3603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383-1136
대전	사회적경제과	042-270-0781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042-254-1581
울산	사회혁신담당관	052-229-8463	(재)울산경제진흥원	052-283-7137
세종	참여공동체과	044-300-5034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044-862-9217
경기	사회적경제과	031-8008-3587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032-668-8124
강원	사회적경제과	033-249-2752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30
충북	공동체협력과	043-220-2564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5
충남	사회적경제과	041-635-2283	(사)충남사회적경제연대	041-417-1107
전북	사회적경제과	063-280-321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1-711-2000
전남	사회적경제과	061-286-5032	(사)전남고용포럼	061-285-7180
경북	사회적경제과	054-880-2623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44-4002
경남	사회적경제추진단	055-211-3784	경남대학교 마을공동체지원단	055-249-6460
제주	경제정책과	064-710-2552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6-4843

감사합니다
